

ESG체제에 따른 유럽연합의 대응과 동향*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한 민 지**

- I. 들어가며
- II. ESG의 연혁 및 발전과정
- III. 기후변화에 따른 ESG 체제의 변화
- IV. 기후변화 대응의 한 방법으로 유럽연합의 ESG 규제입법
- V. 국내법·정책을 위한 시사점 및 제언
- VI. 나가며

국문초록

‘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코알라의 30%가 사망하였습니다.’, ‘50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폭염으로 양식장 조개들이 대량 폐사하였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이재민이 발생하고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등의 언론 보도는 이제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슬픈 일상이 되었다. 그저 환경보호 포스터로, 학교의 사생대회 주제로 북극의 빙하가 녹아 북극곰이 살 공간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피부에 와 닿고 있는 것이다. 자연재해가 천재지변으로 여겨지던 시절과 달리 우리가 접하는 슬픈 일상의 대부분은 산업과 자본주의에 기인한 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일련의 자연재해는 이제 ‘불운’이 아닌 ‘인재’라는 점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가를 기후 약당 국가, 기업을 기후 약당 기업으로 낙인찍으며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이러한 변화의 중심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 ESG다. 그 자세한 내용의 이해 여부를 떠나 사람들은 ESG라는 단어에 수없이 노출되고 있으며, 기업은 갑자기 떨어진

* 본 연구는 녹색기술센터 2021년 주요사업 [R2110101]탈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 아젠다 발굴 및 산업 육성 전략 연구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녹색기술센터 Post-Doc, 법학박사

ESG라는 우박을 피하려 여러 종류의 장비들을 펼치고 있다. '자본주의의 대전환'이라고 불리는 ESG가 과연 무엇인가에 기업이 이렇게 긴장하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 것일까? ESG란 환경, 사회와 지배구조를 뜻하는 각 단어의 영문 첫머리를 딴 약어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를 말한다. 유럽연합은 이 ESG를 법제화하여 기업의 고삐를 쥐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적 위치를 점하려고 하고 있다. 즉, ESG를 제도화 및 체제화하여 탈탄소사회로의 가치 시슬을 재편하고 기후위기를 주도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ESG체제를 분석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ESG체제의 안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핵심어 ESG, EU 텍소노미, 탈탄소사회,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사회책임투자

I. 들어가며

197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세계 기후회의가 개최되었다.¹⁾ 본 회의는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기후변화가 인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예측 및 파악하고 방지할 것을 전 세계에 촉구하였다. 이후 시민단체와 일부 학자들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제기는 소수의 의견으로 간주되거나 심지어는 허구로 치부되기도 하였다.²⁾ 그 후 40년이 지난 2019년, 미국 오리건 주립대(Oregon State University) *윌리엄 리플(William J. Ripple)* 교수를 필두로 한 연구자들과 11,258명의 과학자가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위험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인류를 위협하는 위협요소로 자리 잡았음을 명확히 하며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³⁾

눈 감고 귀 막고 부인해온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기후변화는 서서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에 따른 주장과 증거도 기존의 허구론을 가볍게 뒤집을 만큼 압도적으로 많다.⁴⁾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은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와 위협을 *그린스완(Green swan)*이라 명명하고, 그린스완이

1)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Proceedings of the World Climate Conference - a conference of experts on climate and Mankind: No. 537, Geneva, 12-23 February 1979.

2) 김대호, 『그린스완이 온다: 기후위기 시대, 금융의 새 패러다임』, 한울아카데미, 2020, 9면.

3) William J. Ripple et al., "World Scientists' Warning of a Climate Emergency", BioScience, Vol. 70 No. 1, January 2020, p. 8.

4) 기후변화 진행에 따른 영향과 연구결과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https://www.theguardian.com/science/2019/jul/24/scientific-consensus-on-humans-causing-global-warming-p asses-99> (2021.7.23. 최종방문)

II. ESG의 연혁 및 발전과정

2021년 들어 ESG라는 용어에 대한 관심도가 급상승하기 시작하고,⁸⁾ ESG가 연일 미디어를 장식하고 있지만 해당 용어는 올해 생긴 신조어가 아니다.⁹⁾ ESG의 기원은 역사의 여러 지점과 연결되는데 가장 오래 전의 연결지점을 찾으면 약 200-300년 전인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의 ESG는 여러 가지 사회·정치·경제적 흐름 등이 다양하게 작용하면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ESG의 관행은 사회적으로 해로운 계약 또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사회 책임 운동의 효시를 18세기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John Wesley)의 설교에서 찾는다. 존 웨슬리는 당시 설교에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업 관행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돈을 사용할 것’을 강조하며, 돈과 신앙생활을 연계하여 설교하였다.¹⁰⁾ 이러한 사회책임투자방식은 1970-1980년대 남아프리카의 극단적 인종차별 정책과 제도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에 반대하는 운동과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등 정치·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진행되기도 하였다.¹¹⁾

사회책임투자 방식이 환경으로까지 확장된 것은 대규모의 환경 사고가 발단이 되었다. 1984년 인도 마디아프라데시 주(州) 보팔의 화학공장 유독가스 누출 사고(Bhopal gas tragedy)와 1990년 미국 알래스카 주 프린스윌리엄사운드 일대에서 발생한 엑슨발데즈의 원유 유출 사고(Exxon Valdez oil spill)등의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이에 환경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기업운영과 관련한 정보 공개가 더욱 강력하게 요청되었고, 해당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초기 몇몇 기업이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을 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공개하기 시작하였다.¹²⁾ 이후 1997년 미국의 비영리 환경단체인

8) 구글 트렌드 분석 검색어: ESG(검색조건: 전 세계, 2004현재, 모든 카테고리, 웹 검색): <https://trends.google.co.kr/trends/explore?date=all&q=ESG> (2021.7.22, 최종방문); 이형종·송양민, 『ESG경영과 자본주의 혁신』, 21세기북스, 2021, 19면 이하.

9) ESG는 지속가능성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기에 작성되는 연혁 및 발전과정 이외에 지속가능성과 연계하여 연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삼정 KPMG,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삼정 Insight』 통권 제74호,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1, 3면 이하 참조.

10) Max M. Schanzbach/Robert H. Sitkof, “Reconciling Fiduciary Duty and Social Conscience: The Law and Economics of ESG Investing by a Trustee”, *Stanford Law Review* Vol. 72, February 2020, p. 393; https://www.cfaboston.org/docs/ESG/Responsible_Investing_-_a_21st_Century_Definition_Herb_Blank_Marc_h_2014.pdf (2021.7.23, 최종방문)

11) 이와 관련하여 윤리적 투자에 대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 https://de.wikipedia.org/wiki/Ethisches_Investment (2021.7.23, 최종방문)

12) 리베카 헨더슨(임상훈 옮김), 『자본주의 대전환』, 어크로스 2021, 190면.

환경책임경제연합(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es: CERES)은 기업이 환경 및 사회문제에 책임을 갖고 경영을 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세계 지속가능성 보고서(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를 제작하였고, 1999년 국제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은 해당 보고서를 기업의 사회책임경영과 연계하여 전 세계에 통용되는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서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정착시켰다.¹³⁾

이와 같은 변화는 2000년대에 들어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가 결국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공감대로 확대되었고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측정함에 있어 기업의 지배구조 요소를 산입하기 시작하였다.¹⁴⁾ 기업의 환경(Environmental) 및 사회적 책임(Social)을 비롯하여 지배구조(Governance)로까지 확장된 변화 요청은 계속해서 거세졌으며, ESG 이슈가 기업의 주가 흐름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였다.¹⁵⁾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업이 ESG 지표를 개선시킬수록 더 나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2006년 4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유엔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Kofi Annan)과 세계 주요 연금 기관장들은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투자대상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사회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¹⁶⁾ 이 투자원칙에 ESG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¹⁷⁾ 이러한 시도는 결국 소비자, 금융기관과 투자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을 움직여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통해 기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2021년에 들어 ESG는 기후위기와 맞물려 더욱 강력한 기준으로 변모하고 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라는 소위 전 세계 큰손들의 경고가 기업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¹⁸⁾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해 ESG 지표에 따른

13) 김호균 외 3명,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위한 UN글로벌컴팩트, GRI와 ISO 26000 특성분석”, 한국품질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09, 한국품질경영학회 2009.4., 114면 참조, 지난 20년에 걸쳐 GRI의 지속가능성 보고 방식의 표준은 끊임없이 개발을 거쳐 왔다. 현재 약 1만 540개 조직이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경MOOK, 『ESG: K-기업 서바이벌 플랜』, 한국경제신문 2021. 42면과 45면

14) 최지현, “ESG체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규범의 진화”, (사)한국환경법학회 제146회 정기학술대회, 환경적 가치 구현을 위한 환경법의 확장, 2021년 6월 18일, 37면.

15) 김재필, 위의 책, 66면; 나영·임옥빈, “ESG 정보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교육연구』 제26권 제4호, 한국경영교육학회 2011.8, 442면 이하 참조. ESG성과와 기업의 상관관계와 관련한 최근연구로 강원·정무권, “ESG 활동의 효과와 기업의 재무적 특성”, 『한국증권학회지』 제49권 제5호, 한국증권학회 2020.10. 참조.

16) PRI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 다음 참조: <https://www.unpri.org/pri/about-the-pri> (2021.7.23. 최종방문)

17) 사회책임투자원칙은 총 6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다음의 1, 2, 3 원칙에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가 등장한다. ①우리는 ESG를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킬 것이다. ②우리는 ESG를 투자 철학과 운용원칙에 통합시키는 적극적인 투자자가 될 것이다. ③우리는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이 ESG에 따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https://www.unpri.org/pri/what-are-the-principles-for-responsible-investment> (2021.7.23. 최종방문); Refer to UNEP/UNGC, PRI brochure 2020 (English), p. 4.

평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ESG체제 형성에 변혁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심지어 유럽연합의 경우 민간규범으로 작용하던 ESG를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형성하며, ESG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주도해 나가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ESG가 기후위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비단 개별 기업의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인류의 생존의 문제의 해결방식으로까지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ESG는 소비자, 투자자, 신용평가사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까지 포함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강력하게 요구되는 전 세계적 적용원칙이자 피할 수 없는 조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III. 기후변화에 따른 ESG 체제의 변화

1. 개관

환경, 사회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를 뜻하는 ESG는 각 개별 단어의 영문 첫 글자를 딴 약어이다. 전 세계적 흐름으로 ESG의 의미가 강조됨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 또한 매우 중요해 지고 있다. ESG 평가 사업에 가장 먼저 발을 들여놓은 기관은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이다.¹⁹⁾ 해당 기업은 ESG 대표 평가기관으로 여겨지는데 문제는 해당 기관 외에도 국내외 다양한 평가기관이 존재하며, 각 기관별 점수들로부터 통일적인 평가를 산출해내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ESG 평가 춘추전국시대라고 여겨질 만큼²⁰⁾ ESG 평가 기관에 따른 평가 방식과 기준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각이 담고 있는 내용과 결과 또한 다르게 도출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이렇다. 대표적인 평가 기업의 약자를 이용해 MSCI 지수 또는 SP지수 등으로 서술하였을 때, 2020년에 삼성전자는 MSCI지수(AAA에서 CCC까지 총 7단계)에서 A 등급을 받은 반면, SP지수(100점 만점)에서는 43점을 받았고, LG전자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MSCI지수에서 A등급을 받았지만, SP지수에서는 77점을 받았다.²¹⁾ 여기에 우리나라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평가까지 포함시키면 기관별 ESG 평가 상관 계수는 더 낮게

18) Larry Fink, A Sense of Purpose,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uary 17, 2018; 김재필, 위의 책, 71면 이하 참조.

19) 특히 MSCI 평가 및 지표는 현재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한경MOOK, 위의 책, 52면 이하 참조.

20) 한경MOOK, 위의 책, 52면.

21) 한경MOOK, 위의 책, 53면.

나타난다. 높은 산업 재해 비율과 국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인 포스코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급(S ‘탁월’)에서 D ‘매우취약’까지 총 7등급)에서 A등급을 받은 반면, MSCI지수에서는 BBB등급을 SP지수에서는 74점을 받았기 때문이다.²²⁾ 이렇게 한 기업이 서로 다른 평가표를 받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기업이 ESG를 ‘범위가 없는 시험’으로 생각하고,²³⁾ 개별 지표의 변별력이나 평가지표의 공신력을 무한정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²⁴⁾ 2020년 9월 11일, 이러한 “혼돈을 해결하기 위해” ESG공시 표준을 정하는 5개의 기관(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CDSB*,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IIRC*, Carbon Disclosure Project: *CDP*)이 뭉쳤다.²⁵⁾ 이들은 협업을 통해 통일적인 ESG 글로벌 표준을 만들기 위해 나섰는데 이러한 해당기관의 협업이유에서도 현재까지의 ESG 평가기준이 매우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2. 내용

하기에서는 ESG 용어의 공식적 출발이자, 전 세계적 평가지표로 인정받고 있는 2006년에 시작된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UN PRI)을 중심으로 ESG의 개별 지표의 구체적 요소 및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시이며, 언급한 바와 같이 ESG의 개별적 평가기준들은 통일적이지 않고 각 기관별 내용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중점적인 사항은 최근 ESG 급부상의 배경인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ESG 각 지표의 요소 및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각각의 지표가 함의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다.

(1) E. (Environmental), 환경과 기후변화

ESG 중 ‘E., 환경’은 최근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지표이며, 향후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함에 있어 가장 많이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다. 환경 지표에는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22)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0년 상장기업의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보도자료. 2020.10.14. 참조.

23) 한경MOOK, 위의 책, 18면.

24) 김재필, 위의 책, 134면 이하 참조.

25) 김재필, 위의 책, 118면 이하.

자원고갈, 물, 공해와 삼림파괴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²⁶⁾ ESG가 전 세계적 거대한 조류(潮流)로 자리 잡고 있는 이유도 인류가 환경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위기의 수준이 일정 한도를 넘어버릴 경우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환경 지표에 담긴 내용은 삼림, 담수, 생물 등과 같은 자연자본과 지구가 흡수할 수 있는 탄소의 양에는 한계가 있음에도 인간이 지구의 능력과 수용범위에서 한참 벗어난 수준으로 소비와 생활을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²⁷⁾ 결국 E의 핵심은 이미 지난 간 역사에서 행해진 한계 이상의 행위로부터 발생한 파괴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복원주의에 있다고 할 수 있다.²⁸⁾

E. 지표 중 최근 들어 전 세계의 가장 많은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은 단연 기후변화이슈이다. 지난 날 산림파괴, 생물 다양성 파괴, 수질오염 등의 자연자본의 파괴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인류가 기후위기로 인해 ‘인류멸종’이 예견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는 넷제로(Net-Zero), 탄소중립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감축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며, 가장 많은 탄소배출원(原)인 산업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가 E. 지표에 주요 요소로 담기며, 기업의 움직임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해당 요소에 따라 E. 지표의 평가내용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기업에 뚜렷한 목표와 방법이 존재하는가?’, ‘사막화를 방지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또는 ‘사업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가?’ 등이 고려될 수 있다.²⁹⁾

ESG가 도입되기 전, 기업은 환경과 관련한 책임에 있어 단순히 준법차원에서 최소한도의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으나, ESG가 투자 지표(한결음 더 나아가 구속력 있는 규범)로 작용함에 따라 적극적 동기유인이 형성되고 있다.³⁰⁾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른 ESG 각 지표별 주주들의 관여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에 비해 E. 지표 관여도가 2020년에 299% 향상한 것으로 나타난다.³¹⁾ 이는 다른 지표의 상승률과 비교해 월등한 수치다. 기후변화가 ESG 지표 안으로 포섭되고, 이 지표

26) UNEP/UNGC. PRI brochure 2020 (English), p. 4, 원문: <https://www.unpri.org/download?ac=10948> (2021.7.24. 최종방문)

27) 이형중·송양민, 위의 책, 158면 이하 참조.

28) 제러미 리프킨 (안진환 옮김), 위의 책, 245면.

29) 환경MOOK, 위의 책, 8면.

30) 최지현, 위의 논문, 26면.

31) 블랙록의 ESG 주제별 주주 관여 활동 현황: E(2019년:316, 2020년:1260, ▲299%). S(2019년: 353, 2020년: 965, ▲173%, G(2019년:1931, 2020년 2882, ▲49%), 이방실, “ESG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거버넌스 기후 변화 문제, 사회이사들이 관심 가져야”, DBR 308호, 동아비즈니스리뷰, 2020, 원문: 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5/article_no/9818/ac/magazine (2021.7.24. 최종방문)

가 투자 방향을 지시하며, 투자 방향은 기업의 경영체제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탄소배출과 기업의 이익이 반비례관계를 형성한다는 전제 하에 ESG는 기업 경영방식을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를 포함한 기업의 E. 지표는 '환경 경영을 기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게 만들고 있으며, 기업 경영 기제 전환의 강력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2) S. (Social), 사회와 기후변화

ESG 중 'S., 사회'지표는 사회적 책임 또는 사회적 가치라고도 불린다. 다만, S.지표는 기존에 시민정신과 박애주의에 기초하여 이익과 별개로 행해졌던 자발적 봉사활동, 예술 후원 등을 뜻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는 내용 측면에서 유사하나 행위 동기와 목적이 매우 상이하다.³²⁾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선행행위로 이익창출과 별개로 이루어졌다면, S.지표는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 이익의 극대화에 필수적 요소로 능동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이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S.지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존'의 문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다르게 S.지표는 계량화·정량화되어 투자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S.지표가 소비자 또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고용환경, 공공이익 증대 등과 연계된 것으로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정량화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ESG의 다른 지표보다 내용정 의가 매우 까다롭다는 데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S.지표 내에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매우 많다.³³⁾

S.지표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인권, 현대 노예, 아동 근로, 근로 조건, 근로자 관계 등³⁴⁾이며, 평가내용으로는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건강, 안전을 위한 내부 정책이 존재하는가?', '기업이 국제적 인권 보호 선언을 존중하고,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또는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 등이 될 수 있다.³⁵⁾

S.지표와 관련하여 기후위기를 인권위기로 파악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인권유린 행위로

32) 김재필, 위의 책, 79면 이하; 이형중·송양민, 위의 책, 114면 이하 참조.

33) 김재필, 위의 책, 180면.

34) UNEP/UNG. PRI brochure 2020 (English), p. 4.

35) 김재필, 위의 책, 181면; 환경MOOK, 위의 책, 9면 참조.

판단하는 최근의 경향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³⁶⁾ 최근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연방기후보호법』의 불충분한 감축의무가 미래세대에 부담이자 생명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일부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³⁷⁾, 독일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인권을 연결시키는 소송사례와 판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³⁸⁾ 또한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기업의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정은 탄소 다배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실업,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요구된다. E.지표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기 위해 기업이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를 핵심의제로 삼는다고 할 때, 기존산업구조에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은 S.지표와 함께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정의롭고 존엄하며 공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9년 미국 대선후보로 출마 했던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가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 하며, “한 세기 넘게 우리 경제에 힘을 실어왔음에도 기업과 정치인들에게 너무나 자주 무시당했던 화석연료 노동자들을 돌봄의 우선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고 했던 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³⁹⁾

S.지표에 담긴 주관적일 수 있는 요소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경우 그 파장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해당 지표를 잘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⁴⁰⁾ 특히 기후위기를 인권침해로 파악하고 있는 현재 추세를 파악했을 때, S.지표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은 기존의 평가내용 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측면에서 지표달성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G. (Governance), 지배구조와 기후변화

ESG 중 말미를 장식하고 있는 ‘G., 지배구조’지표는 ‘조정하다’라는 뜻의 라틴어인 ‘구베르나레(gubernare)’에서 유래 되었으며, 거버넌스라고도 한다.⁴¹⁾ 해당 개념은 1999년 9월에 한

36) 조효제, 『탄소 사회의 종말』, 21세기북스, 2020, 84면 이하; 박시원, “기후변화와 인권침해 소송”, 『환경법과 정책』 제 2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9., 37면 이하

37) BVerfG, Beschluss des Ersten Senats vom 24. März 2021- 1 BvR 2656/18 -.

38) 이와 관련하여 조효제, 위의 책, 215면 이하; 박시원, 위의 논문, 47면 이하; 김민철 외, “기후변화 소송의 국제적 경향에 대한 연구”, 『국제법무』 제10집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11., 92면 이하 참조.

39) 해당내용과 함께 버니 샌더스의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https://berniesanders.com/issues/green-new-deal/> (2021.7.25. 최종방문)

40) 예시: 2019년 일본 SPA 브랜드 유니클로의 광고가 한국의 전쟁 성노예 할머니 모독으로 논란으로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고 “NO Japan”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유니클로의 2020년 회계연도 매출액은 전년대비 반 토막이 났으며, 국내 매장 34곳을 폐점하는 등 영업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김재필, 위의 책, 182면 이하 참조.

41) 이형종·송양민, 위의 책, 138면 참조.

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정한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이 발표되면서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1997년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정부가 재벌 개혁의 일환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모범 유형을 제시한 것이다.⁴²⁾ 여기에는 주주의 권리 강화, 이사회 활성화 및 책임성 강화, 감사기능의 활성화 등이 담겨있다. 이는 특정 당사자에게만 편향된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전체 주주와 기업 생태계 내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위함이며, 기업의 지배구조의 핵심 또한 이해관계의 조정 및 규율에 있다.⁴³⁾

G.지표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뇌물 및 부패, 경영진 보상, 이사회 다양성 및 구조, 정치적 로비 및 기부, 조세 전략 등이며, 평가 내용으로는 ‘임직원의 인센티브를 기업의 ESG 성과와 연계하고 있는가?’, ‘이사회 활동에 대한 연례적 평가가 존재하는가?’, ‘ESG활동 전담 조직이 존재하는가?’ 또는 ‘ESG 경영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등이 있을 수 있다.⁴⁴⁾

G.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ESG 전반에 대한 활동이 결국 기업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민주적일수록 기업경영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두 조정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⁴⁵⁾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의 경영시스템이라는 방정식을 세울 때, 기업이 올바른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사대의 흐름에 맞는 의사결정을 내릴수록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은 정비례로 상승하게 된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 등과 같이 시대적 요청에 따른 새로운 가치 결정이 요구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기업의 성장기회를 포착하고 위기를 기회삼아 적극적인 경영판단을 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우위 선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내연기관차의 100년 역사를 써내려간 기업의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굴지의 정유기업의 석유화학 지분 매각 등 글로벌 기업들이 E와 S.지표에 맞춰 자사의 사회구조까지 변경시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⁴⁶⁾ 이러한 변화는 기후위기를 심각한 경영위기로 받아들인 기업의 의사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결국 기후위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논의 할 때, 제대로 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지 여부가 투자의 판단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E와 S.지표가 G.지표로 수렴될 수 있을 정도로 G.지표는 ESG 경영과 리스크관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기업의 백년대계를 위한 출발점이다.⁴⁷⁾

42) 김재필, 위의 책, 190면.

43) 김재필, 위의 책, 191면.

44) 한경MOOK, 위의 책, 9면; 김재필, 위의 책, 201면 참조.

45) 김재필, 위의 책, 191면; 이형중·송양민, 위의 책, 2021, 139면.

46) 한경MOOK, 위의 책, 78면 이하.

47) 김재필, 위의 책, 191면.

IV. 기후변화 대응의 한 방법으로 유럽연합의 ESG 규제입법

2021년 4월 21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연합 전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목표로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⁴⁸⁾ 이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유럽연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가 지속 가능한 기술 및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핵심은 'EU 녹색산업 분류체계', '지속가능성정보공시지침(안)'과 '6개 위임입법'에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ESG규제입법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프로그램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유럽연합의 ESG규제입법은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ESG는 지속가능성으로 치환될 수 있다.

1. EU 녹색산업 분류체계 (EU Taxonomy)

(1) 개관

EU 녹색산업 분류체계는 영문을 그대로 읽어 'EU 텍소노미'라고도 불린다. EU 녹색산업 분류체계는 2030년까지로 설정된 기후 및 에너지 목표를 충족시키고 유럽연합의 그린딜(European Green Deal)⁴⁹⁾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및 활동에 직접 투자하여야 한다는 판단 하에 도입되었다.⁵⁰⁾ 즉, 유럽연합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녹색산업을 분류하고 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행동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결국 EU 녹색산업 분류체계란 유럽연합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 ESG규제입법에 주목하고, ESG를 기업경영의 가이드라인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를 경성규범으로 정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U 녹색산업 분류체계의 도입배경에는 기후변화 외에도 코로나 팬데믹이 존재한다. 코로나

48)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지속가능 금융과 EU 텍소노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조: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1804 (2021.7.26. 최종방문)

49) 그린딜은 UN 2030 아젠다와 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위원장의 정치적 지침에 따른 지속가능한 개발과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필수 전략적 요소로써 2050년까지 유럽연합의 기후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이다, vgl. Europäische Kommission, COM(2019) 640 final, S. 2 f.

50)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유럽연합의 텍소노미 관련하여 다음 참조: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banking-and-finance/sustainable-finance/eu-taxonomy-sustainable-activities_en (2021.7.26. 최종방문)

팬데믹을 겪으면서 기후위기 또는 환경적 충격과 리스크에 대항하기 위한 경제, 기업 및 사회와 보건시스템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EU 녹색산업 분류체계의 도입을 더욱 재촉하였다. EU 녹색산업 분류체계의 도입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시스템 안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지속가능한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금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공통적인 분류가 존재해야 이를 시스템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도출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EU 녹색산업 분류체계는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목록을 설정하는 분류시스템이며, 이러한 분류는 지속가능한 투자를 확대하고 유럽의 녹색 거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동력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EU 녹색산업 분류체계는 기업, 투자자 및 정책입안자에게 적절하고 통일된 내용정의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무늬만 친환경인 그린워싱을 방지하여 기업이 실제적인 전환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 『EU 텍소노미 규정(Verordnung (EU) 2020/852)』⁵¹⁾

2018년 5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투자자에 대한 의무와 분류법에 대한 주요체계를 위한 규정(일명: 텍소노미 규정)’을 제안하였다.⁵²⁾ 2019년 12월 제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 이는 EU 녹색산업 분류체계의 기반을 창설하였다. 합의에 따른 『EU 텍소노미 규정』은 규칙(Verordnung)⁵³⁾형식으로 2020년 6월 22일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후 2020년 7월 12일자로 발효되어 EU 녹색산업 분류체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⁵⁴⁾

총 2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EU 텍소노미 규정』의 핵심은 동법 제1조 제1항에 따

51) Verordnung (EU) 2020/852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8. Juni 2020 über die Einrichtung eines Rahmens zur Erleichterung nachhaltiger Investitionen und zur Änderung der Verordnung (EU) 2019/2088; ‘지속가능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규칙’이라고 적시하는 것이 법령체계에 따른 법적효과나 해석상 더 명확한 표현이나,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EU 텍소노미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EU 텍소노미 규정이라고 표기했음을 밝힌다.

52) EU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Taxonomy: Final report of the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March 2020, p. 9.

53) 규칙(Verordnung)은 ‘명령이라고도 번역되며, 유럽연합운영조약(AEUM) 제288조에 따라 지침(Richtlinie)과 달리 별도의 전환(Umsetzung)을 요하지 않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써 회원국에 직접 구속력을 지닌다. Ertguth/Sabina Schlacke, Umweltrecht, 6. Aufl., 2016, S. 162.; 유럽연합의 법령체계와 관련하여 박인수, “유럽연합의 기본법과 법의 일반원칙”, 『유럽법연구』 제13호, 유럽법학회 2013.6., 35면 이하 참조.

54) 유럽연합이 제공하는 텍소노미 관련 정보는 다음의 홈페이지 참조: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banking-and-finance/sustainable-finance/eu-taxonomy-sustainable-activities_en (2021.7.26. 최종방문)

라 투자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정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 있다. 동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적용대상은 a)생태적 지속가능한 것⁵⁵⁾에 제공되는 금융 상품⁵⁶⁾ 또는 회사채와 관련하여 금융 시장 참여자⁵⁷⁾ 또는 발행자⁵⁸⁾에 대한 요건을 정하는 회원국 또는 연합이 택한 조치, b)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 시장 참여자와 c)『연간 재무제표 및 관련 보고서 등에 대한 지침(Richtlinie 2013/34/EU)』⁵⁹⁾ 제19조 또는 제29a조에 따른 비재무제표 또는 통합 비재무제표를 공고해야할 의무가 적용되는 기업이다. 즉, EU 텍소노미는 비재무적 성과를 구성하는 다양한 활동의 '녹색성'을 정의할 때 사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성과를 집계 및 공개하여 투자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⁶⁰⁾

『EU 텍소노미 규정』 제3조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기준에 따른 경제활동은 다음 4가지 a)동법 제10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환경 목표 중 하나 이상을 달성하는 것, b)동법 제17조에 따라 동법 제9조가 정하는 환경 목표 중 하나 이상을 침해하지 않는 것, c)제18조가 정하는 최소보호를 준수하는 것과 d)동법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는 기술평가 기준 모두에 상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준점을 평가함에 있어 동법 제9조 내지 제18조가 세부근거조항이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 텍소노미 규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9조는 ①기후 변화 완화(Mitigation), ②기후 변화 적응(adaptation), ③수 자원 및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호, ④순환 경제로의 전환, ⑤오염 방지 및 제어, ⑥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시스템의 보호 및 복원 등 총 6가지의 환경 목표를 설정하고

55) '지속가능한 투자'라 함은 동법에 따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하나 이상의 경제활동에 대한 투자를 뜻한다(동법 제2조 제1호).

56) '금융상품'이라 함은 『금융서비스 부문의 지속 가능성 관련 공개요건에 대한 규칙(Verordnung (EU) 2019/2088)』 제2조 제12호에 따라 동법 제6항에 따른 포트폴리오, 대체 투자 기금, 퇴직상품, 연금상품, 양도성 증권에 대한 집합 투자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3호).

57) '금융 시장 참여자'라 함은 『금융서비스 부문의 지속 가능성 관련 공개요건에 대한 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보험 기반 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 포트폴리오 관리를 제공하는 투자회사, 퇴직 연금 기관, 연금 상품 제조사, 대체 투자 펀드 매니저, 범 유럽 개인연금 상품 제공자, 벤처 캐피탈 펀드 관리자, 사회적 기금 관리자, 양도성 증권에 대한 집합 투자를 수행하는 관리 회사, 포트폴리오 관리를 제공하는 신용기관 등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58) '발행자'라 함은 『증권제공 및 거래에 대한 규칙(Verordnung (EU) 2017/1129)』에 따라 증권을 발행하거나 발행하려는 법인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4호).

59) Richtlinie 2013/34/EU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6. Juni 2013 über den Jahresabschluss, den konsolidierten Abschluss und damit verbundene Berichte von Unternehmen bestimmter Rechtsformen und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2006/43/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und zur Aufhebung der Richtlinien 78/660/EWG und 83/349/EWG des Rates.

60) Vgl. Amtsblatt der Europäischen Union., L 182/23.

있으며, 핵심은 기후 변화에 있고 해당 목표는 투자의 중요 기준점으로 작용한다.⁶¹⁾

계속해서 동법 제9조는, 제10조(기후보호를 위한 상당한 기여), 제11조(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상당한 기여), 제12조(수자원 및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상당한 기여), 제13조(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상당한 기여), 제14조(환경오염의 방지와 감소를 위한 상당한 기여), 제15조(생물다양성과 생태계시스템의 회복과 보호를 위한 상당한 기여), 제16조(제9조의 이행을 위한 기타 가능한 활동의 수행), 제17조(환경목표의 중대한 침해)와 제18조(최소보호) 등에서 더욱 구체화 되고 있다. 『EU 텍소노미 규정』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판별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징벌적 의미의 환경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해당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투자자의 행위를 유도하면서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행동 변화를 간접적으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EU 텍소노미 규정』은 ESG를 경성규범화 하였지만, 기존의 경성규범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⁶²⁾

2. 지속가능성정보공시지침(안)(Richtlinienvorschlag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기업의 지속 가능 보고 요건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성정보공시지침(안)’은 2014년에 발효된 유럽연합의 『비재무정보공시에 관한 지침(Richtlinie 2014/95/EU): NFRD』⁶³⁾의 개정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비재무정보공시에 관한 지침』은 특정 대기업에 사회 및 환경 문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비재무정보공시의 목적은 투자자, 시민 사회, 소비자, 정책입안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책임영역을 유도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지침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침(CSR-Richtlinie)’으로 부르기도 한다. 동 지침은 직원이 500명 이상인 공익 기업에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유럽 전역에 약 11,700개의 상장기업, 은행, 보험회사와 국가가 공익체로 지정한 기타 회사 등

61) Vgl. EU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Taxonomy: Final report of the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March 2020, p. 2.

62) 규범 형태의 변화와 관련하여 최지현, 위의 논문, 41면 참조.

63) Richtlinie 2014/95/EU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2. Oktober 2014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2013/34/EU im Hinblick auf die Angabe nichtfinanzieller und die Diversität betreffender Informationen durch bestimmte große Unternehmen und Gruppen

이 포함된다.⁶⁴⁾ 해당 지침에 따라 대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정보는 ①환경문제, ②사회 문제 및 직원에 대한 처우, ③인권 존중, ④반부패 및 뇌물 수수와 ⑤회사 이사회의 다양성(연령, 성별, 학력 및 직업적 배경) 등이다.

최근 발표된 ‘지속가능성정보공시지침(안)’은 기존 『비재무정보공시에 관한 지침』의 적용 범위와 내용을 확대 및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성정보공시지침(안)’을 채택하여 ①직원이 250명 이상인 모든 대기업 및 규제 대상 시장에 상장된 모든 회사(상장된 소기업 제외)로 공시 범위를 확장⁶⁵⁾, ②공시된 정보에 대한 감사 요구, ③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에 따른 공시요구와 더욱 구체적인 공시내용 제시 등 한층 강화된 공시제도를 예고하였다. 특히 ‘지속가능성정보공시지침(안)’은 기업의 재무제표와 관리 보고서를 XHTML형식으로 작성하고 디지털 분류 시스템에 따라 보고된 지속 가능성 정보에 ‘태그’를 달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어, ④공시된 정보의 디지털화를 예고하였다.⁶⁶⁾ 이러한 디지털화는 디지털 처리 보고서의 중앙 등록 부인 ‘European Single Access Point’와의 호환성을 보장하여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정책과 법률의 목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디지털 분류시스템과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은 차후에 마련될 예정이며, 이 중 지속 가능성 보고 표준 초안은 2022년 중순에 마련되어 늦어도 2022년 10월 31일까지 채택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EU 텍소노미 규정』 제9조에 따른 6가지 환경 목표에 대한 정보, 사회 및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 등 ESG가 포함될 것이 예고되었다.⁶⁷⁾

유럽 위원회가 이와 같은 제안서를 채택한 이유는 공시표준을 유럽연합의 정책에 맞게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 표준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해당 제안서가 언제 구속력을 발휘할지는 위원회의 구체적 합의시점에 달려 있으며, 합의하여 확정되어야 할 내용에는 보고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부과할 최소형벌종류와 절차요건을 정하는 것과 벌금액에 대한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⁶⁸⁾ 예정된 대로 일정이 진행이 될 경우 2023년 회계연도를 포함하는 2024년 1월 1일부터 기업에 표준이 적용되며, 이를 위해서는 지침(Richtlinie)⁶⁹⁾이 유럽연

64) 지속가능성정보공시와 관련 지침에 대한 내용은 유럽연합이 제공하는 다음의 홈페이지 참조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company-reporting-and-auditing/company-reporting/corporate-sustainability-reporting_en (2021.7.26. 최종방문)

65) 대차 대조표 총액이 2천만 유로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4천만 유로 이상인 대기업으로 간주한다, <https://www.csr-berichtspflicht.de/csrd> (2021.7.26. 최종방문); 차후 적용대상은 더욱 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해당 지침이 적용되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66) 지속가능성정보공시지침(안)에 대해 상기 언급된 내용 외 관련 사항은 다음의 홈페이지 참조;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1_1806 (2021.7.26. 최종방문)

67) Refer to, Clifford Chance, ESG: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4. May 2021, p. 9.

68) <https://www.csr-berichtspflicht.de/csrd> (2021.7.26. 최종방문)

합 차원에서 발효된 후 늦어도 2022년 12월 1일까지 회원 각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⁷⁰⁾

3. 위임입법

(1) 『EU 텍소노미 규정』에 따른 ‘기후’관련 위임입법

『EU 텍소노미 규정』은 제9조에서 정하는 6대 환경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각 목표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여부를 위임입법에 따른 평가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관련 내용을 위임입법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은 위임입법마련 시기를 목표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데 동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위임입법은 동법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기후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위임입법이다. 관련 위임입법 마련 시기는 다른 목표를 평가하기 위한 위임입법보다 일 년 앞선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시행 또한 일 년 앞선 2022년 1월 1일이다. 이러한 위임입법 시기로 미루어 보았을 때 동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목표의 최우선순위는 기후 대응에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동 규정에 따라 총 3개 조항으로 구성된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위임규칙⁷¹⁾이 제정되었다. 동 규칙은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부칙 I(기후보호를 위한 상당한 기여)’과 ‘부칙 II(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상당한 기여)’에서 규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평가기준은 부칙에서 살펴볼 수 있다. ‘부칙 I’과 ‘부칙 II’는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기후보호와 기후적응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후변화 대응의 양대 축인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되어 주고 있다.

‘부칙 I’은 총 9가지 항목(①산림부문, ②환경보호와 복원부문, ③기업활동과 상품생산부문, ④에너지부문, ⑤환경오염의 제거 및 물관리 시스템과 폐수 및 폐기물 처리부문, ⑥교통부문, ⑦건축 및 부동산 부문, ⑧정보제공 및 교환부문, ⑨기술혁신부문)으로 보호영역을

69) 지침은 규칙과 달리 유럽연합운영조약(AEUV) 제288조에 따라 회원국 각국에 별도의 전환행위를 요한다. 따라서 지침이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회원국을 직접 구속하지 않는다. 즉, 지침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회원 각국을 구속하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입법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형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70) 해당내용을 비롯하여 CSRD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https://www.csr-berichtspflicht.de/csr-d> (2021.7.26. 최종방문)

71) Brussels, 4.6.2021, C(2021) 2800 final.

나누고 각 항목별 세부내용을 정하며 기후보호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시멘트, 알루미늄, 철강 등에 대한 탄소배출량규제가 있으며,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탄소배출량이 그에 상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부칙II’는 상기 9가지 항목에 4가지 항목(①금융 및 보험서비스, ②교육, ③보건 및 사회부조, ④예술 및 커뮤니케이션)을 더해 총 13가지로 적용영역을 나누고 각 항목별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

(2) 기타 위임입법 개정안

유럽위원회는 ESG 체제를 도입하면서 신탁의무, 투자 및 보험 등과 관련한 다음 6개의 수정 입법을 채택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6개의 법제는 ①『수탁자와 관리회사의 합의내용과 위임관리 등에 관한 지침(Richtlinie 2010/43/EU)』⁷²⁾, ②『레버리지, 투명성 및 감독 등에 대한 위임규칙(Delegierte Verordnung (EU) Nr. 231/2013)』⁷³⁾, ③『보험사와 재보험사에 대한 감독 및 운영요구 등에 관한 위임규칙(Delegierte Verordnung (EU) 2017/2358)』⁷⁴⁾, ④『금융상품 및 자금 보호와 모니터링 의무 등과 관련한 위임지침(Delegierte Richtlinie (EU) 2017/593)』⁷⁵⁾, ⑤『보험 및 재보험 사업의 인수와 평가 등에 관한 위임규칙(Delegierte Verordnung (EU) 2015/35)』⁷⁶⁾, ⑥『투자회사의 조직상의 요청 및 운영 조건과 관련한 위임규칙(Delegierte Verordnung (EU) 2017/565)』⁷⁷⁾ 등이다.

72) Richtlinie 2010/43/EU der Kommission vom 1. Juli 2010 zur Durchführung der Richtlinie 2009/65/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im Hinblick auf organisatorische Anforderungen, Interessenkonflikte, Wohlverhalten, Risikomanagement und den Inhalt der Vereinbarung zwischen Verwahrstelle und Verwaltungsgesellschaft.

73) Delegierte Verordnung (EU) Nr. 231/2013 der Kommission vom 19. Dezember 2012 zur Ergänzung der Richtlinie 2011/61/EU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im Hinblick auf Ausnahmen, die Bedingungen für die Ausübung der Tätigkeit, Verwahrstellen, Hebelfinanzierung, Transparenz und Beaufsichtigung

74) Delegierte Verordnung (EU) 2017/2358 der Kommission vom 21. September 2017 zur Ergänzung der Richtlinie (EU) 2016/97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in Bezug auf die Aufsichts- und Lenkungsanforderungen für Versicherungsunternehmen und Versicherungsvertrieber

75) Delegierte Richtlinie (EU) 2017/593 der Kommission vom 7. April 2016 zur Ergänzung der Richtlinie 2014/65/EU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im Hinblick auf den Schutz der Finanzinstrumente und Gelder von Kunden, Produktüberwachungspflichten und Vorschriften für die Entrichtung beziehungsweise Gewährung oder Entgegennahme von Gebühren, Provisionen oder anderen monetären oder nicht-monetären Vorteilen

76) Delegierte Verordnung (EU) 2015/35 der Kommission vom 10. Oktober 2014 zur Ergänzung der Richtlinie 2009/138/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betreffend die Aufnahme und Ausübung der Versicherungs- und der Rückversicherungstätigkeit (Solvabilität II)

77) Delegierte Verordnung (EU) 2017/565 der Kommission vom 25. April 2016 zur Ergänzung der Richtlinie 2014/65/EU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in Bezug auf die organisatorischen

수정 입법이 채택되면서 상기 언급된 법제에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할 것'이라는 새로운 의무사항이 담기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자산관리자, 금융(상품제조)회사 등은 '지속가능성'을 핵심 키워드로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고객들에게 투자조언 시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금융시장을 재편하여 지속가능한 투자를 확산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기후중립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럽연합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위임 법률 개정안은 2022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V. 국내법·정책을 위한 시사점 및 제언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SG 체제에 담긴 함의

표면적 의미에서 ESG는 기업의 행위들을 억제 및 통제하려고 했던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을 기업 스스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려는 적극적 방식이라는 데 있다.⁷⁸⁾ 즉, ESG는 그간 비판받아 왔던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와 시장자본주의⁷⁹⁾에 기반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함의를 담은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의 중심으로 하면서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ESG의 궁극적인 의미는 기후변화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인류의 생활양식을 재편하고, 기후위기의 해법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새로운 개념이 아닌 ESG가 전 세계적 트렌드로 떠오른 그 중심에는 '기후변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기후변화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과연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규제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지 숙고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ESG의 급부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유럽연합의 ESG 입법화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ESG 규제입법은 기후변화가 가시화되고 홍수, 가뭄 등 그 영향이 점차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더욱 구체적이고 속도감있게 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탄생하였다. 즉, 자율

Anforderungen an Wertpapierfirmen und die Bedingungen für die Ausübung ihrer Tätigkeit sowie in Bezug auf die Definition bestimmter Begriffe für die Zwecke der genannten Richtlinie

78) 최지현, 위의 논문, 26면.

79) 이와 관련하여 나옴이 클라인(이순희 옮김),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본주의 대 기후』, 열린책들 2021, 103면 이하; 리베카 헨더슨, 위의 책, 11면 참조.

적인 규제만으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국내의 ESG 제도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법·정책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현행 제도 상황

2021년 3월 31일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 열어야 할 때”라며, “올해 세계 경제포럼에서 각국 정상과 기업 CEO들도 고객과 노동자, 거래업체와 지역사회 등 이해 관계자를 따뜻하게 끌어안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 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힘껏 돕겠다.”고 밝혔다.⁸⁰⁾ 이를 통해 ESG가 국내에도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라는 사실과, 국제사회의 ESG체제 흐름에 따라 법·정책적 대비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제공되었다. 국내에서도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으며, 국내의 ESG또한 세계적 주류와 함께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가시화되면서 ‘E, 환경’ 지표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핵심은 기업, 사회, 국가 등 모든 영역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며, 단기적인 이윤추구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자는 데 있다.

(1)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과 ESG 정보공개 가이드نس

2021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이 ESG 제도적 기반 마련의 총포를 쏘아 올렸다.⁸¹⁾ 여기에는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ESG 정보 공개 방안이 담겼다. 해당 방안의 핵심은 무엇보다 ESG정보 공개 가이드نس를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활성화 하는 데 있다.⁸²⁾ 이는 ESG 관련한 투자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거래사에 공시하고 있는 회사는 2019년도 기준으로 20

80)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 관련 청와대 뉴스룸 기사: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0105> (2021.7.22. 최종방문)

8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2021.1.14.

8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위의 자료, 2021.1.14., 1면.

개시에 그치고 있으며, 이러한 공시의 비활성화와 작성기준의 불명확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그 문제의식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①2025년까지: ESG와 관련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 공시 활성화, ②2025-2030년까지 일정 규모에 해당(예: 자산 2조원 이상)하는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의무화, ③2030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전체에 대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의무화 하는 등 총 3단계의 단계적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

2021년 1월 18일 한국거래소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의 바탕이 되는 “ESG정보공개 가이드선”을 마련하였다.⁸³⁾ 본 가이드선은 ①목적, ②ESG개념, ③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④정보공개원칙, ⑤중요성 평가, ⑥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절차, ⑦ 공개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 공개지표에는 다른 기업과의 원활한 비교와 정량화를 위한 권고지표가 제시되어 있다.⁸⁴⁾ 권고지표는 조직, 환경, 사회를 큰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표 1〉 ESG 정보 공개 가이드선 권고 지표⁸⁵⁾

구분	조직	환경	사회
항목	ESG 대응 ESG 평가 이해관계자	온실가스배출 에너지사용 물사용 폐기물배출 법규위반·사고	임직원현황 안전·보건 정보보안 공정경쟁
지표	경영진의 역할 ESG 위험 및 기회 이해관계자 참여	직·간접배출량 (Scope1/Scope2) 직·간접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사용 집약도 물 사용 총량 폐기물 배출 총량 환경 법규 위반·사고	평등 및 다양성 신규고용 및 이직 청년인턴 채용 육아휴직 산업재해 제품안전 표시·광고 개인정보보호 공정경쟁·시장지배적지위남용

83) 한국거래소, ESG 정보 공개 가이드선, 2021.1.18., 원문링크:
<http://open.krx.co.kr/contents/OPN/05/05000000/OPN05000000.jsp#fe3647848b826aa1ddee224c4b5526f4=1&view=24956> (2021.7.23. 최종방문)

84) 한국거래소, 위의 자료, 30면 이하.

85) 한국거래소, 위의 자료, 30면 이하 재구성.

(2) ESG 모범규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외환위기를 겪은 후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1999년 9월 제정/2003.3. 1차 개정/2016.8. 2차 개정)을 마련하고, 이후에 환경경영모범규준(2010년 12월 제정)과 사회책임경영 모범규준(2010년 12월 제정)을 제정하여 국내 최대 ESG 평가기관이 되었다.⁸⁶⁾ 그러나 해당 모범규준은 제정된 지 오래고, 최근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활용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특히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국내의 동향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특하나 환경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와 필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이 지난 모범규준이 이를 담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ESG 모범규준 개정을 위해 2021년 3월 10일 ESG 모범규준(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⁸⁷⁾

개정안을 바탕으로 지난 2021년 6월 공청회가 개최되고, 최종적으로 지난 8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舊 모범규준이 개정되었다.⁸⁸⁾ 환경적 측면에서 개정된 모범규준을 살펴보면, 해당 모범규준은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전 세계적 환경 정보 공개 요청 증가를 고려하여 '탄소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와 '기후관련 재무 정보 공개 TF(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와 같은 자율 정보공개에 위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새로운 환경경영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해당 모범규준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위험요인(물리적 위험, 전환적 위험)과 기회요인(자원효율성, 에너지원, 제품 및 서비스, 시장, 회복탄력성)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기후변화위기와 기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위험요인에 '모든 유형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소송'을 전환적 위험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기후소송의 일환으로 그린워싱과 ESG 지표에 부합하지 않은 경영으로 인한 회사법소송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또한 부록에 기업에 적합한 탄소가격을 선택 및 도입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을 제시하면서 탈탄소사회를 위한 국가기조 및 세계적 흐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3) 소결

ESG를 통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자체적 제도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86) 환경MOOK, 위의 책, 56면 이하; http://www.cgs.or.kr/business/best_practice.jsp (2021.7.23. 최종방문) 참조.

87)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8571> (2021.7.23. 최종방문)

88)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2021.8.

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과 같이 시장 규모가 큰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ESG의 핵심 내용과 방법이 수렴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⁸⁹⁾ 특히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및 사회를 위해 ESG 규제입법에 주력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최근 동향을 살펴볼 때, 유럽연합의 가치사슬 내에 있는 국내 기업 또한 ESG 규제입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ESG의 평가방식은 유럽연합의 경성규범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ESG 평가(이하: K-ESG)가 글로벌 기준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대응 등 ESG를 통해 달성하려는 세계적·국가적 목적과 방향이 일치한다는 전제하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국가가 취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문제는 EU-ESG규제입법이 경성규범으로 정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K-ESG는 EU-ESG규제입법이 담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상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 간 호환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출이 국내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호환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부담은 기업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며, 국내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즉, ESG 평가방식은 자금이 흐르는 경로와 국제적 영향에 맞춰 형성될 수밖에 없으며, 자체적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표준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EU-ESG규제입법이 새로운 기후체제에 맞춰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ESG체제는 글로벌 경제의 떠오르는 변수이자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로의 변화에 강력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경제변모와 적극적 대응에 미래의 주도권과 경쟁력이 달려있는 상황이다.

3. 법·정책적 제언

(1) 국내지속가능성목표와 관련 지표들 간의 연계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의 ESG 체제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각종 지표들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는다. 기후변화를 비롯하여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위기들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다음세대를 위한 준비태세를 갖춘다는 것과 같고, 반드시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지만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1972년 로마클럽이 발간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시작으

89) 최지현, 위의 논문, 41면.

로 ‘성장’과 ‘환경’이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영향과 국내의 크고 작은 환경문제의 발생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서도 핵심적인 법·정책적 가치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 시작에 2008년에 발효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있고, 동법은 2010년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하:녹색성장기본법)』이 발효되면서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되어 기본법의 지위를 녹색성장기본법에 넘겨주었다. 『지속가능발전법』은 제2조에 지속가능성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⁹⁰⁾ 이러한 기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법』제13조와 제14조는 지속가능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K-SDGs)’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지표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국가의 비전과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지속가능발전포털’⁹¹⁾에 따르면 국가의 현재(21.8월 기준)와 향후 지속가능발전 비전은 “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성 강화, 기후변화적응 및 대응체계 확립, 사회적형평성 및 국민건강 증진, 경제 및 산업구조 지속가능성 제고” 등에 있음에 따라 ESG 또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평가 및 지표에 수렴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국가의 정책기조와 비전을 살펴보았을 때 기업의 ESG지표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연계하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유의미 할 것으로 시료된다. 결국 ESG가 추구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특히 기후변화적응 및 대응체계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지표의 연계는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에 발간된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K-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⁹²⁾의 전체 지표수가 214개임에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지표수는 197개에 그친 이유를 K-SDGs 중 지표 내용이 불명확한 것이 존재하고, 통계 산출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찾고 있으며, 더 나아가 K-SDGs의 목표에 따른 세부목표들 간의 연계성 부족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⁹³⁾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

90) 이러한 정의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 발표한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안드레스 R. 에드워즈(오수길 옮김), 지속가능성 혁명, 시스टे마2010, 38면 참조.

91) 해당 포털에서 지속가능발전,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을 찾아볼 수 있음: <http://ncsd.go.kr/>

92)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채택된 후 2018년 12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수립되었다,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보고서 2019, 2019.7., 11면.

지표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세부목표뿐만 아니라 기업 ESG 경영지표와 국가정책목적을 연계하는 공통의 산출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녹색성장기본법은 유럽연합의 녹색분류체계와 유사한 조항으로 제2조에 따라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제품 등을 정의하고 예컨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제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7조 제 1항), ‘우수재활용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 또는 ‘저탄소인증제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의2호)’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상 제품 및 영역(예: 금융)에 대한 확장을 논의하고, 기업의 활동이 정부시책 및 법제와 정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글로벌 지표와의 호환성 향상과 ESG의 경성규범화

ESG체제로의 전환에 넓게는 인류의 미래와 좁게는 개별 국가의 주도권과 경쟁력이 달려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 주요 기관별 ESG 평가와 K-ESG 평가의 상관계수가 매우 낮게 나타난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 기관별 평가에 한국기업 지배구조원의 평가를 포함시키면 각 기관 간 ESG 평가 상관 계수는 매우 낮게 나타난다. 무엇보다 국내외에서 기후 악당 기업으로 평가받으며, 산업재해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포스코가 K-ESG(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기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은 K-ESG 평가가 과연 글로벌 평가와 호환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⁹⁴⁾ 현재 EU-ESG 평가 표준이 마련 중인 상황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설정될지 전체를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현재 나와 있는 제안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택해야 할 방향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상당한 수준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EU-ESG 평가는 관련 법제를 종합해 보았을 때 ESG 중 ‘E., 환경’지표를 중심으로 체제의 전환을 이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K-ESG의 평가지표는 유럽연합의 표준과 동일하거나 한 단계 더 나아간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 사회에서 인정 받는 지표로 선정되기 어려우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 또한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표문제와 더불어 K-ESG를 연성규범 또는 경성규범형태로 운용할 것인지⁹⁵⁾, 그 운용

93)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20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2020.9., 245면.

94)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0년 상장기업의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보도자료(2020.10.14.) 중 붙임의 2020년 ESG 등급 부여 현황(2020.10.), 7면 참조.

95) 이와 관련하여 백기웅, “기관투자자의 ESG 스튜어디십 코드 법적개선 연구 - 글로벌 ‘K-Governance’ 모델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더욱 구체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사건으로는 ESG체제는 단순히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적 민간규범 또는 연성규범형식을 택할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과 같이 그 틀을 강제하는 경성규범으로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생각해 볼 때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간접적 변화를 유도하면서 기다리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 11월 1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의 의결을 전제로 제안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또한 상기 언급된 이유를 반영하고 있다.⁹⁶⁾ 핵심은 신중한 속도다. 이러한 의미에서 큰 그림을 변화시키기 위한 ESG체제의 적용방식은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ESG 정보 가이드스 권고지표' 또는 'ESG 모범규준' 등은 국가목적달성을 위한 기업의 규제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⁹⁷⁾ 특히 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 탈탄소 등으로 대변되는 국가의 중대한 정책방향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후법안 등을 고려했을 때 ESG가 연성규범으로 존재할 경우 향후 경성규범과 충돌될 소지가 있으며, 당해 법의 목적이 담보되지 못할 우려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ESG체제를 경성규범으로 정착시키고 있는 유럽연합의 태도와 기후중립,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입법·정책적 방향⁹⁸⁾을 살펴보았을 때 K-ESG 또한 경성규범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도 K-ESG를 경성규범화하여 기업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ESG는 개별국가와 개별 기업의 특수성에 맞춰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를 경성규범화 하여 대응할 수 없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ESG체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재촉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자 거스를 수 없는 조류이다. 더욱이 E.지표를 중심으로 체제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E.지표는 더 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 할 때 개별 기업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는 업종별·산업별 ESG 중 어느 부

로서 ESG 경영에의 적극적 역할 모색”, 『법과기업연구』제11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4., 66면 이하 참조.

96) 의안번호 5346.

97) 이와 관련하여 곽관훈, “기업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연성규범(Soft Law)의 활용가능성 및 한계”, 『증권법연구』제18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17.4., 182면 이하 참조.

98) 최근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의 로드맵으로써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까지 감축하기 위한 'Fit for 55 Package'라는 입법·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며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유럽연합의 가치사슬 내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특히 탄소다배출기업 등)에게 저탄소, 탈탄소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가의 문제이지 ESG 체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이에 따라 우선 운용 주체는 기업에게 ESG 평가를 의무화 하고 관련 지표를 제공하는 등 국가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개별 역할은 기업, 소비자와 투자자 등이 함께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큰 틀을 만드는 우선적 운용 주체는 국가가 담당하되,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개별 주체들의 움직임이 K-ESG 체제를 더욱 확실하게 하여 기후위기의 집단적 대응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3) 정보공시제도

지표를 통한 정보 산출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정보의 정보공개방식을 어떻게 하여 ESG 지표와 체제의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ESG체제 구축을 위한 정보공시와 관련하여 EU-ESG는 제도를 구축하면서 정보공시제도를 매우 중요한 축으로 다루며, 관련 정보의 활성화와 정합성 확보를 위해 정보의 디지털화를 선언하였다. 정보공시제도의 디지털화는 관련 정보를 투자자, 소비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투명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유도함과 동시에 그린워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정보공시제도가 ESG체제 구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지속가능한 정보 등을 디지털화하는 것은 정보 활용도 측면에서 필수적인 조치라고 사료된다. 특히 기후와 환경정보는 더욱 투명하고 지속적으로 공개되며 상호감시와 목표 이행 점검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후 및 환경정보의 공개는 국가의 탄소중립정책과 연계하여 탈탄소 사회와 국가의 지속가능성의 견지에서 국가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4) 감축과 적응의 균형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 평가

언급한 바와 같이 『EU 텍소노미 규정』의 ‘기후’관련 위임입법에 따라 ‘부칙 I’과 ‘부칙 II’가 마련되었다. 여기에서 ‘부칙 I’과 ‘부칙 II’이 정하고 있는 항목에 주목하고 싶다. 해당 부칙은 감축과 적응에 경제활동이 얼마만큼 기여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가늠자로 기능한다. 구체적인 내용과 평가기준을 정하며 감축과 적응을 다루고 있는 각 부칙은 9가지의

공통된 항목을 다루고 있다. 이는 감축과 적응이 개별적으로 기능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은 감축 또는 적응의 어느 한 분야에 집중될 것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되, 이미 배출된 탄소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감축과 적응에 따른 균형적 시각을 함양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기후변화 대응은 주로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적응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법으로써 그동안 녹색성장기본법이 담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기후위기 적응 및 기후정의 또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제8조에 따른 감축목표(“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의 타당성 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법이 정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평가에 따라 환류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기후변화 완화 및 감축을 평가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평가하되, 명확한 목표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긴급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환류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E.지표 평가에 단순 탄소저감여부 등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적응 등에 대한 내용까지를 모두 포함시켜 해당 지표를 평가하면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후속적인 조치를 위한 평가기준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5) 정부의 일관된 정책추진과 협업체계 구축

기후위기 대응이 전 세계 과제로 떠오르면서 E.지표가 ESG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번 강조하였다. E.지표의 평가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단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기후대응 차원에서 탄소중립사회 달성을 위한 탄소 저감 또는 배출여부다. 기업이 얼마만큼 탄소저감에 기여했는지 여부가 E.지표 평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탄소중립사회 달성 관련규제가 점차 강화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탈탄소 생산 공정으로의 전환이 기업의 이윤추구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는 메가트렌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환과정을 고려

하였을 때 최근 유럽에서 발표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⁹⁹⁾ 도입과 배출권거래제 강화는 단순히 기업의 이윤추구와 맞닿아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밑그림이며, 전 세계의 생존열쇠를 확보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대응이라는 전 세계적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 탄소중립이 국가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이 해당 규제를 준수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즉, 정부는 규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법·정책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2021년 10월 21일자로 시행되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이와 같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정책은 구속력 있는 단계적 감축 목표 하에 방향성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유기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VI. 나가며

영국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텐(Nicholas Stern)은 2006년도에 ‘스텐 보고서(Stem Review: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를 발표하며, 기후변화는 가장 큰 시장실패의 사례라고 한 바 있다.¹⁰⁰⁾ ESG체제를 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지만, 현재 동향에 따른 ESG체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ESG체제는 기후변화를 야기한 시장실패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장성공사례로 변모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라는 전 세계적 위기를 외면할 경우 소비자를 비롯하여 투자자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고 이는 곧 기업의 존립을 좌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후대응을 위한 기업의 행동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급자족사회로 돌아가지 않는 한, 기업은 현대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 기반이며,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이 시점에 ESG를 바탕으로 한 기업의 생존과 성장전략은 인류의 생존과 성장전략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지난 시간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할수록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국가의 경제 규모와 국력은 정비례 관계를 이루며 상승해 왔다.¹⁰¹⁾ 그러나 시

99) Vgl. Brussels, 14.7.2021 COM(2021) 564 final, 2021/0214 (COD)

100) Nicholas Stern, Stern Review: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2006, p. 25; 원문:

http://mudancasclimaticas.cptec.inpe.br/~rmclima/pdfs/destaques/sternreview_report_complete.pdf
(2021.7.23. 최종방문)

101) 조효제, 위의 책, 105면.

대적 요청이 이 역학관계를 흔들고 있다. 앞으로는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고 탈탄소사회로 도달할수록 국가의 경제와 국력이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후위기는 그 자체로 위험일 뿐만 아니라 그간의 삶의 방식 변화를 유도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기회가 되어 주고 있다.¹⁰²⁾ 이러한 측면에서 ESG는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이 말했던 것처럼 심각한 재난과 같은 파국적 상황에서 오히려 길을 찾는다는 해방적 파국에서의 그 '길이 되어주고 있다.'¹⁰³⁾ 기후위기는 인류가 처한 예견된 파국 상황에서 ESG체제는 그간의 삶의 방식을 빠르게 벗어나도록 하고, 사회전체를 바꿔 기후위기를 도리어 희망의 길을 찾게 만드는 해방적 파국의 한 양상인 것이다.

실과본 비와 같이 유럽연합은 ESG를 법제화하여 구속력을 담보하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가치사슬 내에 있는 기업 또한 이를 염두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유럽연합이 ESG를 법제화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 이면에는 '탄소중립', '탈탄소를 핵심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이 지리 잡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즉, 수출산업이 국내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매우 크며, 기후변화와 맞물려 ESG는 기업 서바이벌 계획이 아닌 전 세계 서바이벌 계획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ESG체제에 따른 대응은 더욱 철저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에서도 ESG와 관련한 다양한 전략과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지속가능성의 견지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중요한 꼭짓점을 설정해 두고 모든 계획이 꼭짓점을 향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K-ESG는 산발적이고 정합성이 떨어져 글로벌 표준에 닿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매우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더욱이 ESG가 세계적 트렌드로 급부상함에 따라 개념적 정의와 구체적 제도 마련 없이 과도한 유행어처럼 빈번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일회적인 대응이 아닌 통일적이고 정합성 있는 제도 마련을 통해 ESG체제를 구축하고 그에 따라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

▶ 논문투고일 : 2021. 7. 28, 논문심사일 : 2021. 8. 15, 게재확정일 : 2021. 8. 24.

102) KBS <명견만리>제작팀, 『명견만리: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의 가치를 말하다』, 인플루엔셜 2021, 218면 이하.

103) KBS <명견만리>제작팀, 위의 책, 219면.

■ 참고문헌

- 강원·정무권, “ESG 활동의 효과와 기업의 재무적 특성”, 『한국증권학회지』 제49권 제5호, 한국증권학회 2020. 10.
- 곽관훈, “기업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연성규범(Soft Law)의 활용가능성 및 한계”, 『증권법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17. 4.
- 김민철·권준석·남궁윤, “기후변화 소송의 국제적 경향에 대한 연구”, 『국제법무』 제10집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 11.
- 김대호, 『그린스완이 온다: 기후위기 시대, 금융의 새 패러다임』, 한울아카데미, 2020.
- 김재필, 『ESG 혁명이 온다』, 한스미디어, 2021.
- 김호균·정홍진·김만규·박동준,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위한 UN글로벌콤팩트, GRI와 ISO 26000 특성분석”, 한국품질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09권, 한국품질경영학회 2009. 4.
- 나영·임옥빈, “ESG 정보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교육연구』 제26권 제4호, 한국경영교육학회 2011. 8.
- 나오미 클라인(이순희 옮김),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본주의 대 기후』, 열린책들 2021.
- 리베카 헨더슨(임상훈 옮김), 『자본주의 대전환』, 어크로스 2021.
- 박인수, “유럽연합의 기본법과 법의 일반원칙”, 『유럽헌법연구』 제13호, 유럽헌법학회 2013. 6.
- 박시원, “기후변화와 인권침해 소송”, 『환경법과 정책』 제2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9.
- 백기웅, “기관투자자의 ESG 스튜어드십 코드 법적개선 연구 - 글로벌 ‘K-Governance’ 모델로서 ESG 경영에의 적극적 역할 모색”, 『법과기업연구』 제11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4.
- 삼정 KPMG,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삼정 Insight』 통권 제74호,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1.
- 이방실, “ESG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거버넌스 기후변화 문제, 사회이사들이 관심 가져야”, DBR 308호, 동아비즈니스리뷰, 2020.
- 이형중·송양민, 『ESG경영과 자본주의 혁신』, 21세기북스, 2021.
- 제러미 리프킨(안진환 옮김), 『글로벌 그린 뉴딜』, 민음사 2020.
- 조효제, 『탄소 사회의 종말』, 21세기북스, 2020.
- 최지현, “ESG체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규범의 진화“, (사)한국환경법학회 제146회 정기학술대회, 환경적 가치 구현을 위한 환경법의 확장, 2021. 6. 18.
- KBS 〈명견만리〉제작팀, 『명견만리: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의 가치를 말하다』, 인플루엔셜 2021.
- 한경MOOK, 『ESG: K-기업 서바이벌 플랜』, 한국경제신문 2021.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20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점검 및 지표평가 결과, 2020. 9.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보고서 2019, 2019. 7.

BIS, “The green Swan: Central banking and financial stability in the age of climate change”, January 2020.

Clifford Chance, “ESG: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4. May 2021.

Erbguth/Sabina Schlacke, *Umweltrecht*, 6. Aufl., Nomos, 2016.

EU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Taxonomy: Final report of the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March 2020.

Larry Fink, “A Sense of Purpose,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January 17, 2018.

Max M. Schanzenbach/Robert H. Sitkof, “Reconciling Fiduciary Duty and Social Conscience: The Law and Economics of ESG Investing by a Trustee”, *Stanford Law Review*, Vol. 72, February 2020.

Nicholas Stern, “Stern Review: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2006.

William J Ripple/Christopher Wolf/Thomas M Newsome/Phoebe Barnard/William R Moomaw, “World Scientists’ Warning of a Climate Emergency”, *BioScience*, Volume 70, Issue 1, January 2020.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Proceedings of the World Climate Conference - a conference of experts on climate and Mankind: No. 537”, Geneva, 12-23 February 1979.

■ Abstract

European Union Response and Trends Under the ESG Regime

-Focused on Response to Climate Crisis and Expansion of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Minji Han*

In 1979, the first World Climate Conference was held in Geneva, Switzerland. By this Conference, Climate change was recognized as a serious problem. Climate change has progressed slowly, and the pace is accelerating. It is clear that if we do not respond properly now, the climate crisis will have serious irreparable impact on the world. For this reason, the world put the climate crisis on the agenda and began to establish common goals and measures to respond to it. Central to that recently is the collapse of fossil fuel civilization through the ESG system. In 2020, Larry Fink, CEO of BlackRock, the world's largest asset management company, declared ESG priority in an annual letter, warning that the climate crisis would soon become an investment crisis, while also focusing 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the future. It will be used as a core strategy for the company's operation, and he has announced that the company will not invest in fossil fuel producers or coal developers. Moreover, in the same vein, the European Union is urg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ompanies to introduce ESG legislation one after another for the transition to a sustainable economic system and to reorganize the value chain toward a decarbonized society.

These changes are expected to spread all over the world, and as a result, domestic companies cannot be sure of their future existence without responding to the changes.

In this situation, we need to look at what ESG is, and how we should respond to the social changes it will bring. Although there are various aspects to looking at ESG,

* Green Technology Center Korea, Post-Doc, Dr. jur.

in this paper, I am looking at the ESG system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trategy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I am trying to find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by identifying the trends in the European Union that enacted ESG system.